

객원교수 임용 규정

제정 2007. 06. 18.

3차 개정 2021. 6.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객원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객원교수란 산·관·학계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업적을 가진 인사로서 교육, 연구, 사회협력 등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 교원과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에 따라 선정된 전문경력자를 말한다. (개정 2018.07.20., 2020.07.30)

제3조(자격 및 직무) ① 객원교수의 임용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전문경력인사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신청 요강에 따른다. (개정 2018.07.20., 2020.07.30)

1. 교육, 행정, 경제, 사회봉사 등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서 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2. 국영기업체,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의 책임자 경력을 가진 인사
3. 기타 본교에서 일반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인사

② 객원교수는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 계약에 따른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 (신설 2018.07.20.)

③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전문경력인사의 자격, 임용절차, 임용기간 및 처우 등은 해당 사업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0.07.30)

[제목개정 2018.07.20]

제4조(임용절차) ① 객원교수 임용은 학과(부)장,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② 객원교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객원교수 임용 추천서
2. 이력서
3. 교육·학문상 업적목록
4. 강의 담당과목 배정현황
5. 학위 및 경력증명서

제5조(임용기간) ① 객원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객원교수는 임용기간이 만65세를 초과하는 경우 만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한다.

③ 객원교수를 재계약할 때에는 제4조의 절차에 따라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07.20]

제6조(임무 및 처우) ① 객원교수의 학기당 강의시간은 3시간 이상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6. 23.)

② 객원교수의 보수는 교육 및 연구경력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하며,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을 지급한다.

③ 객원교수는 본교의 교육 및 연구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07.20]

[전문개정 2018.07.20]

제7조(면직) 객원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한다. (개정 2018.07.20)

1.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2.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3. 임용기간 중 연속 2회에 걸쳐 강의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4.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정원) (삭제 2018.07.20)

제9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기획예산과-677, 2007.6.21)

이 규정은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예산팀-379, 2018.07.20)

이 규정은 2018년 0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예산팀-483, 2020.07.30)

이 규정은 2020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예산팀-361, 2021. 6. 23.)

이 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